

- 2013년도 -
중랑복지 매뉴얼



중 랑 구

- 목 차 -

【저소득시민복지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서비스	7
3 자활근로사업	10
4 근로장려금제도	11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2
6 차상위 우선돌봄	13
7 생업자금융자	14
8 긴급복지 지원사업	15
9 희망온돌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7
10 의료급여제도	18
11 의료급여 대불금·보상금·상한제	19
12 의료급여 중증환자지원	20
13 건강생활유지비지원	21
14 의료급여 상한일수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22
15 암환자 의료비지원	23
1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5
17 한부모가족	26
18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27
19 희망키움통장	28
20 내일키움통장	29
21 문화, 스포츠, 여행이용권	30
22 차상위계층 범위	31

【노인복지서비스】

1 기초노령연금	32
2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33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4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5
5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36
6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37
7 75세이상 완전틀니 지원	38
8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39

【장애인복지서비스】

1 장애인등록 제도 안내	40
2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42
3 장애수당	43
4 장애인 연금	44
5 장애아동 수당	45
6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46
7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47
8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48
9 발달재활 서비스	49
10 장애인 의료비 지원	50
11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51
12 장애인보장구 지원	52
13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53
14 장애인 활동지원	54
15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55
16 장애인 무임 교통카드	56
17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57
18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58
1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59
20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60

【여성·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4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65
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66
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67
5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68
6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69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1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70
2 양육수당 지원	71
3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72
4 아동급식 지원	73
5 꿈나무카드	74
6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서비스)	75
7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76
8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77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8
10 하이서울 장학금	79
11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80
12 드림스타트	81
13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82
14 청소년증	83
15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84
16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요약	85

【주거복지서비스】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86
2 국민임대주택	87
3 공공임대주택	88
4 영구임대주택	89
5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91
6 기존주택 전세임대	92
7 신혼부부 전세임대	93
8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94
9 긴급주거지원	95
1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96
11 장기안심주택	97
12 주택임대료 지원(주택바우처)	98
13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99
14 희망의 집수리사업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보장단위 :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가능(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특례)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단위 :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	3,400	2,900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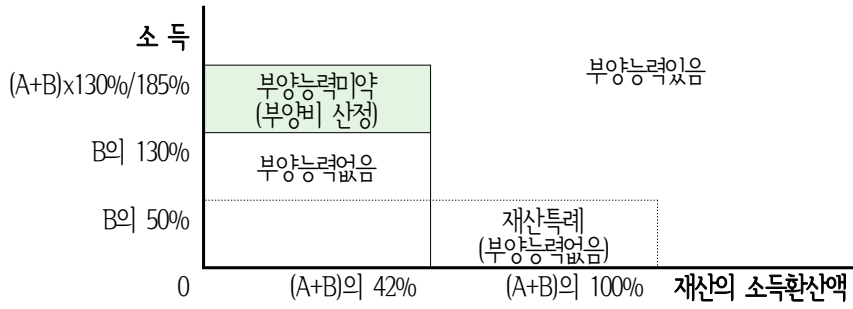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있음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부양비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출기한 딸, 친정부모의 경우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 해외이주자, 행방불명자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자연재해,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그 계부모 등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재혼,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 양자·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 수급자 분류 <<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조건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급자	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 타법률, 기타	노인요양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거주 하는 수급자

>> 근로능력 판정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 65세 미만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 ㉠ 중증장애인
 -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2개월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 ㉢ 기타 근로 곤란자
(20세미만 중고교재학생, 4급이내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자 :
 -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
(양육, 간병보호, 대학생, 장애인, 임신부, 공익근무요원 등)
 - ㉡ 근로 또는 사업 종사자
 - ㉢ 환경변화로 적응이 필요한 경우 (전역, 퇴소, 졸업 등)
 - ㉣ 기타
- 조건부수급자 중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 (조건제시유예) :
질병부상 등의 사유, 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학원수강생,
20세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서비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 보편성의 원칙

- 생계급여 :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80.652%) + 주거급여(19.348%)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현금급여기준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거급여액	90,640	154,330	199,650	244,970	290,290	335,600	380,920
생계급여액	377,820	643,310	832,220	1,021,130	1,210,040	1,398,950	1,587,860

- 주거급여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지급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 ①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② 시설생계비를 받는 수급자
 - ③ 의료기관에 3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④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 (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자
- 주거 현금급여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 (1인 27,000원, 2인 46,000원, 3인 60,000원, 4인 73,000원, 5인 87,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 ※ '자가가구 등'의 범위 : 본인소유주택, 전체무료임차자,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등
- 주거 현물급여 :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 제공(가구당 200만원 상한)

>>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 <<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급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급여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서비스내용 : 행복e음을 통한 보건복지부 입금만을 허용하므로 본인이라도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이 불가하며, 타 용도로 사용(카드결제, 대출금 납입 등) 불가
-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참여 금융기관에서 발급신청

>> 정부양곡 할인지원 <<

- 서비스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내용 : 1인당 월 10kg (단, 5인 이상가구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전년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2013년 기준 20kg 1포대 21,500원)
- 신청방법 : 매월초 동주민센터에 신청시 공급희망지(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양곡대금은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 단,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시 현금 납부)

● 교육급여

	초	중	고	비 고
입학금·수업료	X	X	O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	X	X	O	1인 125,900원 (연1회)
부교재비	O	O	X	1인 37,500원 (연1회)
학용품비	X	O	O	1인 51,000원 (25,500원/연2회)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사산 또는 유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 500,000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750,000원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의료급여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 2종 :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시의 통화료 중 월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5천원 기본할인(초과 50%할인,정액기준))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접속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인터넷: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1,200원 감면)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서비스 대상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전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활터전 마련

자활급여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희망리본		시·군·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작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역량강화 대상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사·군·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이욕증진 대상자

자활장려금(구, 자활소득공제) 사업 :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 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근로장려금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소득 지원

● 서비스 대상

● 지급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

① **배우자·부양자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

② **총소득 기준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가 배우자 있으나 부양자녀 0명 :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나) 부양자녀 1명 : 총소득기준금액 1,700만원

다) 부양자녀 2명 :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

라) 부양자녀 3명 이상 :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원

③ **주택**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가구

④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생계·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서비스 내용 : 부양자녀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매년 5월 세무서 방문·우편·인터넷(www.eitc.go.kr)·전화·휴대전화 신청

● 지급절차 :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년회 지급.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총당 후 남은 금액 지급)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문의 : 국세청 ☎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경감을 통한 의료 지원

서비스대상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120%	686,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2,885,580

● 기본재산액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3,500	8,500	7,250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식대의 20%
		7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2종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75세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차상위 우선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여 차상위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대상

기본원칙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지원 등 기존 보호제도 우선 연계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책정대상자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지원 등에 대해 연계지원 실시
- 선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 각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및 민간지원 연계

부 처	사 업 명	부 처	사 업 명
보건복지부	정부양곡지원 ·노인 안전 및 개인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푸드뱅크 연계	지식경제부	난방연료긴급지원 전기요금긴급지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문화관광부	문화바우처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화재청	공능무료입장
교육과학기술부	대입 기회균형선발 ·국가장학금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생업자금용자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자활의지, 사업전망·기술·경영 능력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이 용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으로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2,319,599원, 2013년 4인가구 기준)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조건	고정금리 3.0%, 5년거치 5년상환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 내)	
대출유형	무보증대출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인요건	연간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자 중 1명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담보대출	금융 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 추천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금액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386,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1,430,000

- 생계비
- 의료비 : 1회 3백만원까지 (1회 지원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주거비 (금액단위 : 원)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액	345,400	573,900	756,900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입소자의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교육지원 (단위 : 원)

구 분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액	197,700	314,800	· 385,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단위 : 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액	85,800	500,000	750,000	500,000

■ 관련 민간 기관 단체 연계 지원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858,250	1,461,340	1,890,470	2,319,590	2,748,720	3,177,840

- 생계지원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 액	686,600	1,169,070	1,512,370	1,855,670	2,198,970	2,542,270

■ 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13,500	8,500	7,250

■ 금융재산 기준 :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위기상황 발생 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129)로 신청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문의 :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2-2094-1610~5

희망은들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지역사회의 기부나눔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나눔의 온정을 전달

●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 대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위기가정

● 지원내용

지 원 항 목	지 원 액	지 원 횟 수
냉난방비	최대10만원	최대2개월
생계비,주거비,의료비	최대30만원	

※ 수급자 : 의료비, 주거비만 지원 가능

● 복합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

● 대상 : 복합문제를 가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위기가정

● 지원내용

지 원 항 목	대 상	지 원 액
긴급의료비	수술비,치료비,간병비,검사비 등	최대200만원
장애진단비	경제곤란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자	최대100만원
긴급생계비	급식중단, 단전, 가스연체, 의료보험체납, 실직 등	최대100만원
임시주거주택지원	재난, 월임대로 체납, 주거, 주거환경 개선 등	최대300만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4개 거점기관에 신청

거점기관	연 락 처	지 원 등
신내종합사회복지관	3421-3400	중화1동, 중화2동, 상봉1동, 상봉2동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3421-1988	신내2동, 면목본동, 목1동, 목2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38-4011	망우본동, 망우3동, 신내1동, 면목2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436-0500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 문의 :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02-2094-1610~5

의료급여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선정기준

- 1종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권자
- ② 행려환자
- ③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서비스 내용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액

구 분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의 : 중앙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의료급여 대불금·보상금·상한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액을 대불해 주거나 본인부담금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기회 확대

- 서비스 대상 :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서비스 내용
 - 대불금 지원
 - 대불기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대불금 상환 :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
 -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의료급여 중증환자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여 보장성 강화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또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한 자, 중증화상환자
-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경감 (5% 적용)

●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전 신청 : 확진일로 소급 (토요일, 공휴일 포함)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보장기관 신청일로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적용기간 :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재수술시 : 재 수술일로부터 30일 추가 경감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 보장기관 (구청, 동주민센터)에 제출 → 보장기관에서 등록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기관에 등록확인서 제출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면제자(18세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급여 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전액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의료급여 상한일수·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는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의료급여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함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 연장승인

- 신청일수
 - 107개의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 : 90일 (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적용대상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90일(1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365일+90일(1차)+90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의 : 중앙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포함)
-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 암 발견자,
 -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 201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소아암환자 :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금액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7,213,950

(금액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재산기준	203,163,165	232,088,562	252,670,143	273,251,727	293,833,236	314,414,820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까지 지급
- 폐암환자 : 법정 본인부담금 100만원 정액 지급
- 소아암환자 : 연간 2,000만원 (백혈병 3,00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소아암환자 : 만18세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 보건소 등록 및 지원신청
- 소아암환자 : 보건소 신청 → 생활실태조사(주민생활지원과) → 선정

● 근거법령 : 암관리법

● 문의 : 중랑구청 보건소 의약과 ☎ 02-2094-0923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내용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50만원, 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2094-1696

>> 심장병 수술비 지원 <<

- 지원대상 : 심장병, 얼굴기형, 콩팥이식, 골수이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 서비스내용 : 수술 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재입원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FAX, 인터넷 접수
- 문의 : 한국심장재단 ☎ 414-5321~3

>> 실명 예방 사업 <<

- 지원대상 :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만10세 미만 어린이 안과수술비
- 서비스내용 : 안과 사전검사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 ☎ 718-1102, 1088

>>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 센터 <<

- 정신보건센터 : 구청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 <http://www.kamh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 <http://www.counseling.or.kr>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 <http://www.onmaum.com>
- 알콜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g-health.kr>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 미만
 - 재산기준 : 2013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 미만

구 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일 반	환자가구	300%	300%
	부양의무자가구	500%	500%
혈우병	환자가구	400%	1,000%
	부양의무자가구	600%	1,200%
고쇄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가구(3인이하)	1,000% (1,200%)	1,000%
	부양의무자가구(3인이하)	1,200% (1,400%)	1,200%

>>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 2012년 가구별 최고재산액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고재산액(원)	67,721,055	77,362,854	84,223,381	91,083,909	97,944,412	104,804,940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본인부담금), 간병비(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월18만원이내), 특수식이구입비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보건소등록 신청 → 생활실태조사(주민생활지원과) → 대상자 선정
-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문의 : 중랑구청 보건소 의약과 ☎ 02-2094-0923

한부모가족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 : 최정생계비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 150%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자녀 (월 7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 서울시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월5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1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실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5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빈곤의 토대를 구축하는 서울형 복지모델

● 서비스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사업공고일 기준)
희망플러스통장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조건을 충족 하는 자 ③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꿈나래통장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③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서비스 내용

● 희망플러스통장

- 지원내용 : 수급자는 5/10만원, 저소득층은 10/20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 지원 (이자 별도)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소규모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훈련비용

● 꿈나래통장

- 지원내용 : 참가자는 3/5/7/10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지원함 (이자 별도)
- 저축목적 : 자녀교육자금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희망플러스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1~7
 꿈나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5

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의료·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 (소득요건 충족시)
- 시설수급가구 (소득요건 충족시)
- 1가구 1회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 및 민간 매칭금 지원
- 지원개요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적금상품)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 3년내 탈수급시 민간매칭금 일괄 정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전액 지급(단, 민간매칭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내일키움통장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희망키움통장에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과거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원은 가입 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내일키움통장 특별중도해지, 만기 지급 해지한 자는 재가입 불가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불량자도 신청은 가능함)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3년간 개인 저축에 대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지원개요 :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 내일키움 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급),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수입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15만원),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자활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문화, 스포츠, 여행이용권

저소득으로 인해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화생활, 스포츠활동, 여행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문화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가구내에 만10-19세 청소년이 있을 경우 1인당 5만원 추가지원)
	신청절차	-기발급자: 재충전방식 (ARS 1544-7500,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분실자·신규신청자: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스포츠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5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이용권카드 지급)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여행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개별여행(15만원) ☞ 1인가구 - 가족여행(30만원)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차 상 위 계 층 범 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기초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구분	특 성	비 고
한부모가족	만18세(취학시 만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130%
차상위장애인	등록 장애인	
차상위자활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차상위보육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우선돌봄차상위	타 차상위자격 미취득자	

기초노령연금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830	1,328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분 - 상시근로소득공제(1인당 45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 = (일반재산합계 - 기본재산액(1억8백만원))×재산소득환산율(5%)
 - ㉡ = (금융재산합계 - 2,000만원)×재산소득환산율(5%)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고 96,800원 ~ 20,000원
부부가구	최고 154,900원 ~ 40,000원

※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급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차감하여 지급함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 **단순무임카드(시니어패스)** <<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서울시민인 경우 주소지 동 이외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
- 주민센터에서 기수령한 재고 카드 이용하여 단순무임카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 경로식당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이용방법 : 경로식당 운영기관에 이용 신청하여 대상자선정 후 이용

기 관 명	연 락 처	소 재 지	급식일자
시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493-9966	겸재로 9길 45 (면목동)	6회 (월~토)
면목종합사회복지관	436-0500	용마산로 34 (면목동)	6회 (월~토)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3421-1988	신내로 115 (신내동)	5회 (월~금)
신내종합사회복지관	3421-3400	봉화산로 153 (상봉동)	6회 (월~토)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38-4011	신내로 56 (신내동)	5회 (월~금)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3421-4800	신내로 15길 175 (신내동)	6회 (월~토)
구립중화경로복지관	436-1390	동일로 138길 28 (중화동)	5회 (월~금)
나눔의집	434-9345	용마공원로 57길 69-6 (망우동)	5회 (월~금)
중화동교회	436-5968	동일로 139길 10 (중화동)	5회 (월~토)
사랑의집	495-2517	송림길 91 (망우동)	5회 (월~금)
동서울중앙교회	494-7110	면목로 29길 37 (면목동)	5회 (월~토)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밀반찬배달

●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한 독거어르신

● 이용방법 : 주민센터로 신청

기 관 명	연 락 처	담 당 동
시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493-9966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면목종합사회복지관	436-0500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7동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3421-1988	신내2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3421-3400	상봉1동,2동(일부),중화1동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38-4011	망우본동,3동,신내1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3421-4800	중화2동, 목1동,목2동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976-2808	목1동, 목2동 (밀반찬만 배달)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65세 이상 노인
- 대상자

서비스대상자	① 장기요양등급 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자
--------	---------------------------------------

서비스 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서비스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6,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8,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 등급(1·2·3등급)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 서비스 부담금

- 시설급여 수혜자는 20% 본인부담, 재가급여 수혜자는 15%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이의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신청방법

- 등급판정신청(공단) → 방문조사(공단) → 등급판정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중랑구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전문 요양원 <<

- 서울시립중랑노인요양원 ☎ 437-0144
- 신내노인요양원 ☎ 490-2600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구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장애인 3~4등급자 또는 중증질환자 중 가구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서비스 내용

서울재가관리사 8명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내용

- 개인활동 서비스 : 목욕, 용변수발, 병원진료 등 외출 시 부축동행, 이발 등
- 가사지원 서비스 :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등
- 사회적 서비스 : 행정관청 업무대행, 취미, 사회활동 조장 등
- 상담 서비스 : 신상에 관한 상담 등(가정방문간호사업과 병행추진)
- 서울재가관리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대체 가능한 대상자는 서비스 전환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외(A,B) 해당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미만 장애인 1~2등급자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 주5일 (월~금)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4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노인일자리 사업

연초 중량구청, 사업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등 노인일자리
대상자 신청, 접수, 선발 실시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수행기관	연락처
중량구청	2094-1704
사립중량노인복지관	493-9966
산내노인복지관	3421-4800
중량구 노인회	2207-3563
면목종합사회복지관	436-0500
사립대종합사회복지관	3421-1988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438-4011

- 대상자 : 중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 선발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정부부처(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선발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발
- 문의 : 중량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04

>> 취업알선기관 <<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www.k60.c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www.100senuri.go.kr)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중량구 관할 북부고용센터 ☎ 2171-1700)
-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

75세이상 완전틀니 지원

만 75세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아 노인에게 틀니를 지원하여
식생활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75세이상 무치아 노인

● 서비스 내용

●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아 레진상 완전틀니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율	20%	30%	50%
대상	의료급여1종,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2종, 차상위(만성질환자)	건강보험 (지역, 직장)

● 신청방법

병원진료 후 등록신청서 발급 → 대상자 사전등록(치과병원) → 대상자 확정 후 서비스이용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만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패턴을 향상시키고자 함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 소득 12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92천원	52,944	41,084	53,013
2인	3,324천원	98,184	111,830	99,456
3인	4,931천원	146,708	167,132	148,761
4인	5,812천원	168,374	190,350	171,697

서비스 내용

건강상태 점검 : 분기 1회

운동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주3회, 1회 90분

구분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수중운동	월12만원(정부11만원, 본인1만원)	12개월
체조,에어로빅	월7만원(정부6만원, 본인1만원)	12개월

장애인 등록제도 안내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 15종이 있음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 가능
 - 장애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	읍면동 →	의료기관 →	읍면동 →	연금공단 →	읍면동
등록신청	진단의뢰	장애진단서발급	심사요청	심사 및 결과통보	등록

-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 기존 등록 장애인은 재진단 사유가 있을 시 재진단에 응해야 함.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제한됨.(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음)
- ※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이중등록여부 확인필요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2013.01.27 시행)

● 장애인등록 허용자격 : F-4, F-5, F-6(F-2,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구 분	정 의	확인자료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결혼이민자 (F-6, F-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혼인증빙서류
외국국적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이 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재외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장애등급심사

- 관련절차는 국내인과 동일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공증본과 원본)을 제출하도록 안내

● 자격확인 주의사항

-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유무를 확인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10조

● 문의 : 종량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최초 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장애등록 진단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진단서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 장애등급 조정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대상 제외

■ 검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연금,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 대상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서비스 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검사비 지원

- 기초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직권재진단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는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직접청구(동주민센터), 기관청구(의료기관에서 구청에 청구)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월,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2	1,260,315	1,546,399
최저생계비의 120%	688,602	1,169,079	1,512,378	1,855,679

●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연금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580,000원	928,000원

● 서비스 내용

- 기초급여 : 월 2만원~96,800원 차등지급 - 소득보장성격의 연금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최고 154,900원 (1인 77,450원)
 - 부가급여 : 월 2만원~17만원 차등지급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 (단위: 월, 원)

구분	기준	기초	부가	지자체급여
기초	18~64세	96,800	80,000	30,000
	65세이상(재가)	0	170,000	30,000
	65세이상(시설특례)	0	70,000	30,000
차상위	18~64세	20,000원~96,800	70,000	30,000
	65세이상(기존)	0	140,000	30,000
	65세이상(신규)	0	70,000	3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원~96,800	20,000	0
	65세이상	0	40,000	0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연금법
- 문의 : 종량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 포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단위: 월,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2	1,260,315	1,546,399
최저생계비의 120%	688,602	1,169,079	1,512,378	1,855,679

●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구분			월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자	10만원
		차상위계층	10만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자녀 (초·중·고생)

가구원수(인)	1인	2인	3인	4인
소득인정액(원)	743,818	1,266,500	1,638,410	2,010,319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지원제외 :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서비스 내용

- 학비(고등학생)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교과서대(고등학생) : 1인당 125,900원 지급(연1회)
- 부교재비(초중등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 1인당 37,500원 지급(연1회)
- 학용품비(중고등학생) : 1인당 51,000원(학기별로 25,550원 연2회)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 유도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단위: 원)

가구원수(인)	1인	2인	3인	4인
소득인정액	1,430,420	2,435,577	3,150,787	3,865,997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창업자금 대여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융자이율	연 3% 고정금리	
융자기간	최대 5년거치 5년상환 (융자신청자 선택에 따라 상환가능)	
자금의 종류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②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③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④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⑤ 자기개발 훈련비, ⑥ 의료비 등	
융자요건	무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 1,000만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 배기량 50cc미만인 것을 제외
 - 콜벤(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가능

● 서비스 내용

용자 조건		
한도액	이율	용자기간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3%	5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대출시행기관 : 국민은행)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 문의: 중랑구청사회복지과 ☎ 02-2094-1681~5

발달재활 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장애에 준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소득수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단위: 월,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240,000	4,154,000	6,164,000	7,104,000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 서비스 이용 가격

(단위: 원)

구분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본인부담액	면제	20,000	40,000	60,000	80,000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제공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②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

● 서비스 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외래	1차의료급여기관	원내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2차의료 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총액의 15% (차상위14% 등록암환자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등록암환자5%)		전액		
입원	1,2,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14% 중증환자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서비스 신청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중증질환자

: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진단서·소견서 첨부한 자

● 제외대상 : 만65세이상의 노인, 보장시설입소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쇼핑, 청소, 식사보조, 양육보조, 활동 및 정서적 지원, 간병지원(체위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단가 및 제공시간

(단위: 월, 원)

구 분	월24시간		월27시간		비 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금액	면제	17,520	9,450	19,710	

※ 제공시간 : 월24시간, 27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보장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서비스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수급권자 :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수급권자 :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 지원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함.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고 지급가능
 -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불가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1종,2종수급권자)
 - ①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 → ② 수급자격 결정신청(읍면동) →
 - ③ 시군구 적격여부 판단 → ④ 판매업자로부터 보장구 구입 →
 - ⑤ 보장구 검수확인 → ⑥ 시군구로 급여비 청구
 - ※ 차상위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 서비스 대상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우선순위
 -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기초수급자 ③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
 - ④ 재가장애인 ⑤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서비스 내용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장애 구분	교 부 품 목
지체 및 뇌병변 (1~2급)	목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목창예방 보조기구, 자세보조용구,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유리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심장(1~2급)	목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목창예방 보조기구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제출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활동지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1,2급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매월 이용가능한 급여량(월 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추가급여액(시간)
1등급	919,000원(약107시간)	최중증 1인가구	2,163,000원 (253시간)
		최중증 취약가구	
2등급	738,000원(약86시간)	중증 1인가구	171,000원 (20시간)
		중증 취약가구	
3등급	556,000원(약65시간)	출산가구	684,000원 (80시간)
4등급	374,000원(약43시간)	자립준비	171,000원 (20시간)
		학교생활	86,000원 (10시간)
		직장생활	86,000원 (10시간)
		보호자일시부재	17만1천원 (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624,000원(73시간)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예 신청(연중수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문의 : 종량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

보행상 불편과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을 보조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 내용

-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차량을 통한 이동 및 안내보조
 - 이용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중 신장 1~2급, 시각1~3급 등록장애인
 - 이용방법 : 전화신청 (서울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02-2092-0000)
 - 이용요금 : 5km까지 2,000원 / 5km 초과시 500m당 100원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 이용요금 : 무료
 - 이용방법 : 중랑구 홈페이지(<http://www.jungnang.seoul.kr>) 확인
-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 콜택시 차량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
 - 이용요금 : 일반택시 요금과 동일(단, 승객 호출비 제외)
 - 이용방법 : 전화신청 (☎ 02-555-8787)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 이용대상 : 지체 및 뇌병변 1·2급 중증장애인, 기타 중증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이용방법 :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및 전화신청(☎ 1588-4388)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수 이내

● 문의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서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서비스 대상

-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 서비스 내용

● 카드의 종류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복지구입 카드)
 - 장애인 단순무임카드(장애인 교통카드)
 - 어린이(만6세~12세), 청소년(만13세~18세), 일반(만19세 이상)
 - 중증장애이용 단순무임카드
 - 서울시에 거주하는 1~3등급의 장애인
 -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청소년용 중증장애인 단순무임카드 발급
- ※ 지하철 단말기를 두 번 태그하여 장애인과 보호자 통과

● 서비스 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 ※ 그 외 지역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충전 후 사용가능

● 분실신고 및 신청방법

● 분실신고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카드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상담센터에 신고
(신한카드 ☎1544-7000, 신한은행 ☎1544-8000)

- 단순무임카드 : 신한은행 상담센터, 동주민센터는 본인 방문 신고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재발급시 은행에 3천원 수수료 납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이하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92천원	52,944	41,084	53,013
2인	3,324천원	98,184	111,830	99,456
3인	4,931천원	146,708	167,132	148,761
4인	5,683천원	168,374	190,350	171,697

● 장애(질병) 및 연령 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만60세 이상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중 제출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연령무관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시간 : 월4회(회당 1시간)
- 서비스 내용 :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 및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 이용기간 및 이용가격 : 10개월 지원
 - 월4회 제공 : 월136천원 (바우처 지원액 124천원, 본인부담 12천원)
- 주의사항 : 시각장애인안마 바우처 대상자 선정 이력 있을시 향후 사업년도에 재신청 불가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

무주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및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특별공급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며 신청시점에 월세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 자녀가 장애 1급 또는 2급이며 신청시점에 월세 거주 중인 한부모가구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지원내용

- 보증금 : 2인 이하(세대당 75백만원), 3인 이상(세대당 85백만원)
- 입주기간 : 2년거주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최장 6년가능)

●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

● 신청대상 :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지적, 정신, 뇌병변(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선정내용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 서비스대상

● 신청대상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서비스내용

●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출산여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중 미수급자는 지원 가능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 신청방법 및 문의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9조 2항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81~5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 ~ 12세 장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반: 39만4천원/월 - 방과후: 19만7천원/월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구분</th> <th>내용</th> <th>사업기간</th> <th>급여</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복지 일자리</td> <td>학교급식도우미, 홀몸어르신안부지원이 등</td> <td>12개월</td> <td>273천원</td> </tr> <tr> <td>장애인 행정도우미</td> <td>지자체 관공서 등에 배치 자치단체에 맞는 업무수행</td> <td>12개월</td> <td>1016천원</td> </tr> <tr> <td>시각장애인 안마사피견</td> <td>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td> <td>12개월</td> <td>1,000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홀몸어르신안부지원이 등	12개월	273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자체 관공서 등에 배치 자치단체에 맞는 업무수행	12개월	1016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피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	12개월	1,000천원	시군구 및 위탁기관 공개모집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홀몸어르신안부지원이 등	12개월	273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자체 관공서 등에 배치 자치단체에 맞는 업무수행	12개월	1016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피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에 배치하여 서비스제공	12개월	1,000천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명의를 1~3급의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자치단체 조례에의 함)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시·구·군 세무과에 신청
소득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관할 세무서
장애인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관할 세무서
상속세 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과세금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공급 금액 공제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금액에 불산입 	관할 세무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취업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2.5%(12), 2.7%(14)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이양 사업 및 지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 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수화통역 센터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수화통역 센터
공동생활 가정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 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주간· 단기보호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 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 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 장애인 복지관
문화체육 시설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및 1~3 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입장요금 무료 - 고궁, 응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제시
코영 증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 차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 부여	장애인 등록증 제시

●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 4~6급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장애인 등록증 제시
유선전화 요금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장애인명의 전화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50% ■ 시외: 월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50% 	관할 전화국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 기초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 구원 ■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가 속한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해당 이동 통신사
TV수신료 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구	■ TV수신료 전액 면제	한전 사업소
무료법률 구조제도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심의한 사건에 대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대한법률 구조공단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1~3급) 국내선 50%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장애인 등록증 제시
연안 여객선 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급: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장애인 등록증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주민등 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주택용 도시가스에 한해 1㎡당 81원 할인	해당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3급)	■ 정액감액 : 월 8천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서비스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소득판별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서비스 내용(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체외수정시술	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 수급자는 300만원), 최대 지원횟수 4회
인공수정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내(기초생활 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횟수 3회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이용방법(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1차시에만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정부지원 서식)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연중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문의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 02-2094-083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산모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자

● 서비스 내용

- 임신 동안 받는 임신·출산에 관련 진료 비용 중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 다태아 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원
- 지정요양기관중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상병에 한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한약, 처약 등)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 1일 6만원의 사용한도 폐지(2013.3~)

● 전자 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미사용 지원금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우체국,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맘편한카드) <<

-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1회 당 120만원(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가능한 카드
- 우리카드 홈페이지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신청안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산모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소득(천원)	1,385	2,055	2,368	2,422	2,476	2,530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20일 이내

(※ 사산 및 유산 포함/ 만 4개월 이상 임신 유지시 => 의사소견서 첨부)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 원칙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이용시간 : 평 일 09:00~17:00 (8시간, 도우미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09:00~13:00 (4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
※ 대리인 신청시 산모와 대리인 신분증 두장 다 지참
-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산모수첩(출산예정일 기재 필)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 쌍둥이 : 의사소견서 첨부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 문의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 02-2094-083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만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별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 자부담 금액 : 식품패키지 별 연평균 월 단가의 10%로 매월 동일 금액 납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취약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 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가정배달방식 전달이 원칙)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토르핀, 굴/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영양평가	- 약 3개월에 1회 실시(대상자 선정 시, 자취재향)가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시, 장·적 중간평가) - 빈혈 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 지역 보건소 직접방문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산모 수첩
- 근거법 : 국민건강증진법
- 문의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 02-2094-0842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 철분제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이상 임산부(임신성빈혈인 경우 4개월부터 조기지원)에게 분만전까지 지급
- 엽산제 : 35세이상 임산부에게 임신3개월까지 지급 *산모수첩과 신분증 지참 주소지 보건소 방문

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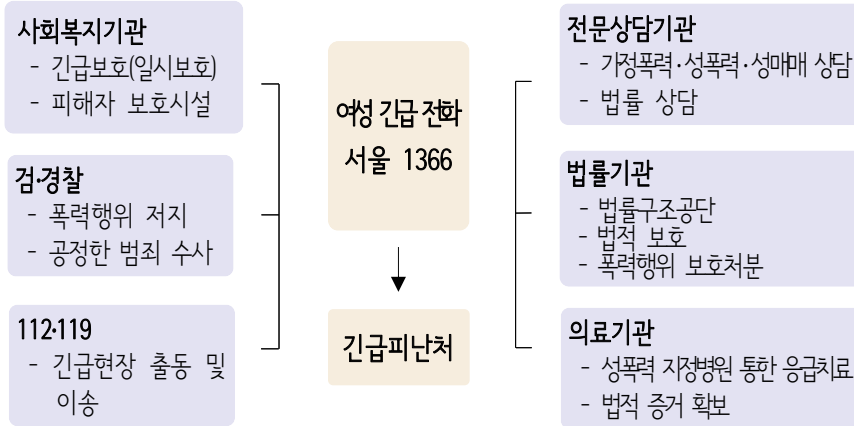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 서비스 내용 : 1년 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10명의 상담원이 1일 3교대 상담

● 상담내용

- 외국인 자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연결 서비스 구축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기타 여성폭력 관련 상담 및 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
- 보호시설연계, 전문상담기관 안내, 직접 상담, 정보제공 등

● 상담 처리 및 절차 : 12개 기관 전용회선 구축 및 긴급 피난처 운영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10시~17시까지 전문상담기관 연계, 그 외 시간 1366 상담원 직접 상담
- 사이버 상담 : 공개·비공개 상담 내용을 홈페이지 (<http://www.seoul1366.or.kr>) 상담실 혹은 이메일(seoul1366@hanmail.net)로 상담원들의 답변을 통해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우리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

서비스 내용

방문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가정으로 파견

사업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언어소통 어려움 및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양육지원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 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임신·출산 지도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 통·번역서비스 사업 : 입국초기 상담, 정착지원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상담, 교육과정 통역,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센터내방 자녀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센터 인근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파견 언어교육
- 언어영재교실 운영 : 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1개반 당 10명 내외) 및 부모 대상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문의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5432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가정 (전계층 소득·재산수준에 무관)
 - 만0~2세, 3~5세(누리공통과정)
 - 다문화가정 보육료 : 다문화가족 지원법 2조1호에 따른 출생자녀 만0~5세
 - 장애아가정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 만5세이하 영유아의 경우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도 가능

● 서비스 내용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금액

(단위: 세,천원)

만0~2세	만3~5세	장애아	다문화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220천원	-394천원 ※장애아누리과정(만3~5세) 414천원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5세 220천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영유아 부모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아이사랑카드-우리, 국민,하나은행)·유치원(아이즐거웁카드-농협) 이용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복지포털(www.bokjiro.go.kr) 혹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전계층 아동의 가정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서비스 내용

(단위: 개월,천원)

연령(개월)	일반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23	150천원	177천원	
24~35	100천원	156천원	
36~47		129천원	100천원
48~취학전		100천원	

● 근거법령 및 문의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 연령별 출생연도 (201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기준)<<

- 만 0세 : 2012. 1. 1 이후 출생
- 만 1세 : 2011. 1. 1 ~ 2011. 12. 31 출생
- 만 2세 : 2010. 1. 1 ~ 2010. 12. 31 출생
- 만 3세 : 2009. 1. 1 ~ 2009. 12. 31 출생
- 만 4세 : 2008. 1. 1 ~ 2008. 12. 31 출생
- 만 5세 : 2007. 1. 1 ~ 2007. 12. 31 출생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하여 저출산 시대에
민·관·시민이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

● 카드 종류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다둥이행복카드
- 체크카드 : 체크카드 기능을 겸한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 확인용 카드 :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해주는 카드

● 서비스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로 물품구매 및 시설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전영업점 방문 카드 신청 및 다둥이행복카드 홈페이지(<http://seouli.bccard.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9955)

- 신분 확인용 카드 : 동 주민센터

- 문의 : 종량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아동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급식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지자체에서 실시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지원방법

- 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꿈나무카드

아동급식지원 방법 중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육구에 맞는 일반음식점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 이용방법

- “꿈나무카드” 표지가 부착된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를 하면 식사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

구분	사용가능금액	사용범위
1일 1식	1일 4,000원 사용	한달동안 급식비 범위내에서 1일 1회 8,000원까지 사용가능
1일 2식	1일 2회 8,000원까지 사용 가능	1일 한도가 8,000원 이므로 다음날 이월 안됨

구분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지원대상자	결제O	결제X
평일만 지원 대상자	결제X	결제O

● 꿈나무카드 가맹점

- 구청 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 중랑소식-구청소식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 대상자 본인인 청소년·아동만 사용 (어른 및 타인 사용발견시 급식대상에서 제외)
- 이사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 반납
- 분실·훼손·도난시 동주민센터로 신고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 안됨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급식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소재	기관명	전화번호
망우3동	온세계지역아동센터	2209-5579
	참좋은지역아동센터	432-0091
망우본동	망우지역아동센터	436-3663
	서울지역아동센터	432-9004
	솔로몬지역아동센터	439-8679
	열린지역아동센터	435-2151
	중랑재미지역아동센터	070-7787-5154
면목2동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492-8728
면목3,8동	성심지역아동센터	495-5072
	참사랑지역아동센터	493-0009
	녹색지역아동센터	070-8688-4343
	동원지역아동센터	433-3324
면목4동	면목지역아동센터	070-7539-6010
면목5동	만나지역아동센터	438-9191
	즐거운지역아동센터	495-9839
면목본동	씨앗지역아동센터	070-7434-3006
	차오름지역아동센터	433-2077
	파란나라지역아동센터	494-0476
목2동	푸른꿈지역아동센터	972-7179
상봉1동	참이랑지역아동센터	433-3131
상봉2동	한길지역아동센터	435-6022
신내1동	파랑새지역아동센터	432-5622
신내2동	마루아라지역아동센터	3421-1988
중화1동	중화지역아동센터	438-3025
중화2동	생명강지역아동센터	438-068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원칙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93,000	2,770,000	4,109,000	4,736,000

서비스 내용

- 독서도움미 주1회 이상 파견(방문1회당 20분 내외), 책읽어주기, 도서지급(또는 대여) 및 독후활동 실시,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 바우처 지원액 : 대상자별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에 따라 최대 25,000원 ~15,000원 차등지원
- 본인 부담금 : 이용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서비스 이용

- 지원절차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
- 이용방법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핸드폰번호로 인증번호 발급후, 해당 인증번호로 서비스 이용 시 결재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교원빨간펜	1577-6688	아이북랜드	1588-6006	대교눈높이	080-222-0909
구몬학습	1588-5566	웅진씽크빅	1577-1500	장원교육	1588-0979
한솔교육	1588-1185	재능교육	1588-1132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1566-0133
 중앙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91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병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사추천서가 있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 의뢰된 아동 등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서비스내용

● 아동의 증상에 따라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 인지, 미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혼합하여 월 4회 제공하고, 부모상담을 월 1회 제공

● 서비스이용금액

(단위: 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2등급 (월평균소득50%이하)	3등급 (월평균소득100%이하)
본인부담금	16,000	32,000	48,000
정부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 제공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자광아동가정상담원	02-492-3623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02-438-4107
성모마음정신과의원	02-972-4300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일시돌봄' 및 '종일돌봄'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대상

시간제	영아 종일제
0세(3개월) ~ 만 12세 아동	생후 3개월 ~ 12개월의 아동

● 지원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지도 등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 기준 (4인 가구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50% (237만원)	50%~70% (332만원)	70%~100% (474만원)	초과	50% (237만원)	50%~70% (332만원)	70%~100% (474만원)	초과
이용 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원(200시간 기준)			
정부 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0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 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원 시간	연480시간 원칙(월별 제한 시간 없음) ※ 2012.8.6. 적용				월 200시간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및 아이돌봄지원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하이서울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고교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선발대상

-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최저생계비 150%)
-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경제상황 악화로 긴급하게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지원 내용

- 선발 해당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

● 선발절차

-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행복e음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세대원의 소득인정액 확인

선발공고 → 학교장추천 → 자치구별 생활실태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 하이서울장학위원회심의 → 장학생선정/학비지원

● 문의

- 서울장학재단 ☎ 070-8667-3506 / www.hissf.or.kr/webadm
-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 02-2094-1880~3

●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가능
☎ 1599-2000 / www.kosaf.go.kr

가정위탁아동보호 사업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효정신함양비	50천원/세대년2회(설, 추석)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대학입학금	3,000천원/인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자립정착금	5,000천원/세대 (형제자매등의 경우 세대별 1회만 지급)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이 종료되는 만 18세이상의 아동
직업훈련비	600천원/인분기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을 대비하여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600천원/인분기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자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

● 서비스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 ※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우선 지원원칙

● 제공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구청) → 욕구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 서비스내용

분 야 별	서 비 스 내 용
신체/건강 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마음과 신체 발달 증진 - 취약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인지/언어 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정서/행동 서비스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	- 전문사례관리자 1:1 가정방문 지원 - 부모의 자긍심 강화 및 양육기술 지원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92~3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중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1~2년간 기초적인 생활·건강·학업·자립 지원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연령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자
(단, 생활, 건강지원은 최저생계비 150%미만)

● 서비스 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동주민센터, 중랑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 → 가구소득조사 및 특별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 문의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청소년증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
인과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보장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학생여부 관계없음)

- **발급절차**
 -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 → 「행복e음」등록 → 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 →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
 -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및 사진1매 (임시증 필요시 추가 1매 필요)
 - 소요기간 : 15일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신청확인서' 발급가능)

- **근거법령 및 문의**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 02-2094-1750~6

중랑구 소재 청소년 시설

기관명	주 소	연락처
망우청소년수련관	중랑구 송림길 156 (망우동)	490-0212
용마청소년독서실	용마산로 393, 용마문화복지센터4층 (면목동)	496-8689
신내청소년독서실	중랑구 망우로65길 20, 2층(신내동)	434-3887
면목청소년독서실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동)	439-4692
망우청소년독서실	중랑구 봉우재로 233 (망우동)	432-8030
양원청소년독서실	중랑구 송림길 172 (망우동)	432-0534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자격)

-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기준을 초과한 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희망자는 신청 접수

순위	자격 소득인정액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1	기초수급자	○	○	○	○	○
2	한부모가족	○	○	○		○
3	차상위	○	○	○		
4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130%이하	130%이하	120%이하		
5	담임추천	○	○			

● 서비스 내용

구분	대상	내용
고교학비	고1~고3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중3~고3학년	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1~고3학년	연60만원 이내 지원
교육정보화지원	초1~고3학년	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19,250원

주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요약

바우처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 노인중 (소득 150%이하)	- 방문(27~36시간), 주간(9~12일) - 가사·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주간보호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65세이상 (소득 120%이하)	- 건강상태점검 - 운동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	1~2급 장애인(6세~65세미만)	- 기본(42~103시간), 추가(10~80시간) -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예정)일 前 40일 또는 後 30 일 이내 (소득 50%이하)	- 단태아(2주), 쌍태아(3주), 삼태아(4주)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만2세~6세아동 (소득 100%이하)	- 15,000원~25,000원 - 독서도우미파견(책읽어주기, 독후활동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이하 문제행동(ADHD) 위 험군 아동 (소득 100%이하)	- 심리상담, 부모상담(월1회) - 아동조기개입서비스(월4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3급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 증질환자 (기초,차상위)	- 24~27시간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발달재활 서비스	만18세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 청각·언어·시각장애 (소득 150%이하)	- 월14~22만원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재활서비스 등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양쪽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언어 포함)장애인의 만18세 미만의 비 장애아동 (소득 100%이하)	- 월18~22만원 - 발달진단·심리상담서비스, 언어·청능치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2% 금리로 국민주택기금 위탁은행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제도

● 서비스 대상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 소지, 각 지역별 임차보증금액을 초과, 영구·국민·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시·도지사 인정시 85㎡이하 주택도 포함
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600만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2,800만원(3자녀이상세대는 + 7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
대출기간	15년 분할상환(대출금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대출금리	연리 2%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대출상담(은행) → 용자대상자 추천(구청) → 대출기관에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 근거법령 : 주택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13

>> 전세자금 보증 <<

- 주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 발행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지원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자체·지방공사·주택공사 등)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자산 소유 기준에 따른 신청 제한 있음

구 분	입 주 자 격	입 주 자 선 정 순 위
전용면적50㎡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①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 이상인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50㎡이상~60㎡이하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3자녀이상,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내 출산(임신증이거나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①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이고 혼인기간내 출산(임신증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이고 혼인기간내 출산(임신증이거나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 서비스 내용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80% 수준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LH공사, SH공사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자의 입주자모집 공고 후 신청
- 근거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문의 : LH 공사 ☎ 1600-1004, SH 공사 ☎ 1600-3456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는 모든 주택임대지원 서비스

● 입주대상

- 전용85㎡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 전용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 가입자

● 입주자격

구 분	입 주 자 격	
일반공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주 ※ 순위·순차에 따라 선정	
특별공급	3자녀 이상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노부모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
	신혼 부부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 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생애 최초	근로자(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 납입금이 600만원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 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기관 추천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 ☞ 북한이탈주민 포함

영구임대주택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또는 입주자 부담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

● 서비스 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입주자 선정

입주대기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배정에 의한 종합점수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임대조건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 임대절차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가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20점 -> 30점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세대주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세대주 연령 20점 -> 25점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세대원수 (30점)	1~2인	2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가산점 (15점) 세대주 기 준으로 하 되, 장애인 의 경우 세 대원 포함	유형 3가지	15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점->15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무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녀3인이상 무양자, 철거지역이주자, 재해·위험건물철거이주자, 혼인기간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유형 2가지	13	
	유형 1가지	11	
	기타	7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0점->7점 4~6급 장애인, 10년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저소득계층이 도심 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 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일반가구·공동생활가정(그룹홈)·기타로 구분됨
 - 일반가구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 제한산액(서울지역 50㎡의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15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 신청방법

구 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일반가구	입주자 모집 기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자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하여 내공사에 통보 ☞ 내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입주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도지사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입주
기타	자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 근거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내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로, 월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의 연2% 이하 해당액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저소득 :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등록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그 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대학생 등으로 구분 공급

●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 :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밖의 지역 4천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 그밖의 지역 7천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 5인이상시 예외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월임대료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하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시행자) ⇨ 입주 신청 접수(입주 희망자) ⇨ 입주대상자 선정(구) ⇨ 전세 임대 지원 안내(사업시행자) ⇨ 입주 희망주택 물색(입주 희망자) ⇨ 전세 임대 가능여부 검토(사업시행자, 입주대상자)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내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며, 그 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으로 수도권 최고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외 4천만원까지 ※ 입주자가 전세주택 임차권을 내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 초과 금액을 부담시 한도액 초과 주택도 가능. 이 경우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단, 가구원 수가 5인이상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 재계약시 예외인정 가능
- 임대조건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력 유지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거주)

신청방법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내공사 ☎ 1600-1004, SH공사 ☎ 1600-3456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서비스 대상 ※ 단, 지원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소년소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시·군·구 지정, 읍·면·동 관리
교통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 ※ 교통안전공단 지정·관리
가정위탁 아동	대리양육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이며,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지립 지원센터장 추천자 한함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대상으로 수도권외의 경우 최고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까지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40㎡이하 주택으로 제한
 - 공공임대주택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가구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 지원조건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을 지원
 - ※ 단, 만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 자격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함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긴급주거지원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의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의 자로서 동법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공사에 통보한 자단, 시·군·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자격 회수로 가구구성원이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임대조건

구 분	전용면적	임 대 료 수 준
다가구 매입임대	60㎡ 이하	시중임대료의 30% 수준(보증금 1~400만원 월 임대료 1~10만원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 이하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원 수준
국민임대	60㎡ 이하	시중임대료의 50~80%수준(보증금1~2000만원 월 임대료 8~15만원 수준)
미분양 매입임대	60㎡ 이하	시중임대료의 50~80% 수준
부도 매입임대	60㎡ 이하	시중임대료의 50~90% 수준

※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신청시 - 공급신청서 및 신분증 도장
 계약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입주자 및 세대원의 사진
-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또는 내공사 ☎ 1600-1004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

● 선정기준

소 득	토 지	자 동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 서비스 내용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 임대조건

구 분	쪽방·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범죄피해자
기준주택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 100만원(50만원 일시불 납부 후 나머지10개월 분납 가능)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250~350만원
기준주택 전세임대	수도권 · 광역시 5,000만원 기타 4,000만원 한도 전세 지원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81,660원(4,900만원*2%/12개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지원 임대보증금 : 250만원(5,000만원*5%) 월 임대료 : 79,160원(4,750만원*2%/12개월)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운영기관이 내공사와 계약한 동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에서 각 가구별 임대조건 결정	
국민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 주택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조건 :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 문의 : 내공사 서울지역본부 ☎ 02-3416-3545 또는 해당 운영기관

장기안심주택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최대 6년까지 특별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 대상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선정기준

자 산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자 동 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미만인 무주택세대주 * 가구원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제외)의 합임 * 월평균 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1-(0.1×경과년수)}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공급유형	운 영 방 식	거주기간
보증금 지원형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5%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문의 : SH공사 ☎ 1600-3456/02-3410-7781~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택임대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이하인 자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주 택 바 우 처

-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 다)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거주 1년 이상인 가구
- 라) 월세 거주가구(※준주택 -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 마)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인 가구
- ☞ 상기의 다)라)마)를 모두 만족하는 가), 나) 가구가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 ☞ 주택바우처 신청시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동시 신청하여 소득조사 시행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구 분	주 택 바 우 처
지원금액	1인 43,000원 ~ 6인이상 72,500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가옥주 계좌 입금 또는 임차인 계좌에 입금

선정기준

(단위:원)

기 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688,602	1,169,077	1,512,378	1,855,679	2,198,978	2,542,279
최저생계비 150%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문의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693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경감시켜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 내용

- 사업내용 : 단열·창호교체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빈곤해소에 기여함.

● 지원내용

- 단열공사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창호공사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바닥공사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물품지원 :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

- 가구당 120만원으로 하되 시공지원가구 중 20%범위 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가능

● 사업추진절차

1. 준비작업 - 사업계획확정 및 공고
2. 지원가구 및 지원내역 결정 : **대상가구선정** (사업위탁 복지관 자체 선정 및 동주민센터 추천) → 시행기관선정 → 시공업체선정 → 현장조사
3. 지원 및 정산 : 계약체결 → 시공 및 물품지원 → 감리 및 평가 → 정산 및 대금지급

희망의집수리사업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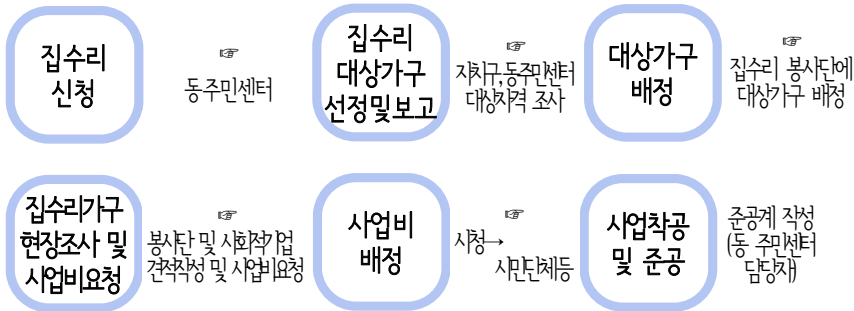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 내용

- 수리가능시설 : 100만원이내에서 주거에 필요한 13개 표준공정* 및 기타사항 (경미한 수리)
 - ※ 13개 표준공정 : 도배, 장판, 단열(벽), 도어, 방수, 샷시, 처마, 씩크대, 위생 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정벽공사, 타일(화장실, 주방), 페인트, 전기
- 수리제외시설 : 보일러 등(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 중인 공정)
- 추진내용
 - 상반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반기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다자녀, 다문화, 외국인근로자도 수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실시기관 : SH공사)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 종량구청 사회복지과 ☎ 02-2094-1728

< 주거복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다가구 매입임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생활 안정 도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 실시
국민임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가능)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억 1천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6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7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4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5천만원 이하)